

『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권재욱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관련 조항 및 용어 수정,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변경에 따른 부서 신설로 용어 변경이 필요하게 됨.
- 공동주택관리지원 범위에 방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및 차단기 등을 추가하여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-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제외대상을 신설하고,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시설관리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- 공동주택의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관련 조항을 변경(안 제2조, 제4조)
- 공동주택관리지원의 기준 및 대상 변경(안 제24조제1항, 제2항)
- 공동주택관리지원의 제외대상 신설(안 제24조제3항)

- 공동주택 지원 대상 중 관련 호 신설(안 제24조의3)
 - 전자투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
- 구미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변경(안 제27조)
- 구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용어를 변경(안 제3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8. 30. ~ 9. 6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공동주택 관리지원의 기준과 대상을 추가하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,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지원 요구가 많아 매년 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